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0 발의연월일: 2024. 6. 25.

발 의 자: 장경태·박민규·강준현

복기왕 • 전진숙 • 김승원

김용민 · 민형배 · 안태준

김민석 · 최민희 · 이재관

양부남 • 이병진 • 문금주

허종식 · 이학영 의원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4년 고비용 저효율 정치 개선과 비민주적 운영 지양을 이유로 지구당을 폐지하였으나 정당운영에 있어서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국민들의 정치 의식 수준 향상과 대의정치 제도 아래 정당의역할 제고, 지방자치시대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고려할 때. 지구당 제도 부활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이에 지구당을 지역당으로 부활하고 관련 등록절차를 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함. 나아가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원민주주의 및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9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을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 및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이하 "지역당"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 중 "100명 이상의"를 "100명 이상의, 지역당의 경우에는 20명이상의"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시·도당의 창당승인)"을 "(시·도당 및 지역당의 창당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시·도당"을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중 "시·도당"을 각각 "시·도당 및 지역 당"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을 "(시·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청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당"을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8세미만인"을 "시·도당의 경우에 한정하고, 18세미만인"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를 "제 13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청사항)"로 한다. 제19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시·도당"을 각각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도당"을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도당"을 "시·도당, 지역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도당"을 "시·도당, 지역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도당"을 "시·도당, 지역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시·도당"을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시·도당"을 각각 "시·도당 또는 지역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당"을 각각 "시·도당 또는 지역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당"을 "시·도당이나 지역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당"을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도당"을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한다.

제26조 전단 중 "시·도당"을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중 "시·도당"을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중앙당: 100명 이내
- 2. 시・도당: 총 100명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하는

수 이내

3. 지역당: 2명 이내

제35조제1항 전단 중 "중앙당과 시·도당"을 "중앙당,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시·도당"을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본문 중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를 "읍·면·동별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도당"을 "지역당"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를 "(시·도당 및 지역당 창당승인의 취소)"로 한다.

제47조 중 "시·도당"을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1호 중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를 "제13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청사항)"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도당"을 "지역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당의 등록 및 성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정당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 및 성립된 정당으로 본다. 다만, 각 정당은 이 법 시행일부터 180일 이 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당의 등록 및 성립 요건을 갖추어 야 한다.

- 제3조(당원의 소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입당한 당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당이 창당된 경우 그 당원은 해당 관할 지역당에도 소속된 것으로 본다.
-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	제3조(구성)
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	
·도에 각각 소재하는 <u>시·도</u>	시·도당
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	(이하 "시·도당"이라 한다) 및
으로 구성한다.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이하 "지역당"이라 한
	<u>다)</u>
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6조(발기인)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	
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u>100명</u>	<u>100</u> 명
<u>이상의</u>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이상의, 지역당의 경우에는 20
	<u>명 이상의</u>
제9조 <u>(시·도당의 창당승인)</u> 시·	제9조 <u>(시·도당 및 지역당의 창</u>
<u>도당</u> 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u>당승인)</u> 시·도당 및 지역당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①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u>시·도당</u> 의 소재지와 명칭	7. 시·도당 및 지역당

- 8. <u>시·도당</u>의 대표자의 성명· 주소
- ② · ③ (생략)
-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5. (생략)
 - ② 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 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 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 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 본(18세 미만인 당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생략)
- 제14조(변경등록)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제13조(시 ·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어는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

8. <u>시·도당 및 지역당</u>
<u>시·도당의 경우에 한정</u> 하고, 18세 미만인

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야 한다.

1. ~ 5. (생략)

제19조(합당) ① · ② (생 략)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시·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 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 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u>시·도당</u>은 소 멸된 것으로 본다.

⑤ (생략)

제23조(입당)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u>시</u> <u>•도당</u>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 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제19조(합당)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시·도당 및</u>
<u>지역당</u>
<u>시·도당 및 지역당</u>
4
<u>시·도당 및 지</u>
<u>역당</u>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입당) ①
<u>\lambda</u>] •
<u>도당, 지역당</u>

이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 ②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도당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 ③ 입당신청인은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

· · · · · · · · ·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u>시·도당, 지역당</u>
③시·도당, 지역
 당

는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 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 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 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④ (생략)

- 제24조(당원명부) ① <u>시·도당</u>에 저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중앙당은 시·도당의 당원 명부에 근거하여 당원명부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당의 당원명부와 중앙당이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당원명부가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원명부의 효력은 시·도당의 당원명부가 우선한다.
- ③ · ④ (생 략) 제25조(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 저 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

,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당원명부) ① <u>시·도당 및</u>
<u>지역당</u>
② <u>시·도당 또는 지</u>
<u>역당</u>
시·도당 또는 지역당
시·도당 또는 지역
<u>당</u>
③ · ④ (현행과 같음)
세25조(탈당)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속 <u>시·도당</u>에 탈당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속 <u>시·도당</u>에 탈당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 ③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시·도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 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 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 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탈당증명서를 교 부하고, 해당 <u>시·도당</u>에 통보 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 하게 하여야 한다.
- 제26조(탈당원명부) <u>시·도당</u>에는 지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

<u>시·도당 또는 지역당</u>
-시·도당 또는 지역당
- <u>시·도청 또는 시듹청</u>
1. ~ 3. (현행과 같음)
2
시·도당이나 지역당
<u>시·도당 및 지역당</u>
· ④
<u>시·도당 및 지역당</u>
세26조(탈당원명부) <u>시·도당 및</u>
<u>지역당</u>

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 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의2(입당원서・탈당신고서 기의 보관 및 폐기) ① 시·도당 의 보관 및 폐기) ① 시·도당 은 당원명부·탈당원명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지 5년이지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전자매체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기계한) ①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 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② ~ ④ (생 략)

제35조(정기보고) ① <u>중앙당과 시</u> 조 <u>• 도당</u>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제27조의2(입당원서・탈당신고서
의 보관 및 폐기) ① 시·도당
및 지역당
,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u>1. 중앙당: 100명 이내</u>
2. 시·도당: 총 100명 이내에
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하는 수 이내
3. 지역당: 2명 이내
제35조(정기보고) ① 중앙당, 시
·도당 및 지역당

다음 연도 2월 15일(시·도당 은 1월 31일)까지 관할 선거관 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은 당해 연도의 정책추진내용과 그 추진결과 및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 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 ④ (생 략)
-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 ② (생 략)
 - ③ 정당은 <u>국회의원지역구 및</u>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u>시·도당</u>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 제46조<u>(시·도당 창당승인의 취</u> 소) (생 략)
- 제47조(해산공고 등) 제45조(자진 해산)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 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나 중 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 의 <u>시·도당</u> 창당승인의 취소

<u>시 • 도당</u>
및 지역당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읍·면·동별로</u>
지역당
•
제46조(시・도당 및 지역당 창당
<u>승인의 취소)</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47조(해산공고 등)
- <u>시·도당 및 지역당</u>

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 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 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 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3조(시 ·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자
 - 2. (생략)
 - 3.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u>시</u> <u>•도당</u>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 무소를 둔 자
 - ② (생 략)

게EO코(원이드르시원과 도) ①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 -
1
2.
제13조(시
•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
청사항)
0 1 0 /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u>지역</u>
2. (현행과 같음) 3
2. (현행과 같음) 3 <u>지역</u>
2. (현행과 같음) 3 <u>지역</u>
2. (현행과 같음) 3